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1415
등록일자	2015.1.12.
결재일자	2015.1.1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직무대리	구청장
정승은	정재하	박선옥	김창현	주윤중	01/13 신연희
협조자					

『저소득주민의 행복과 탈수급을 향한』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계획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제27조(급여의 실시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2조(보장비용),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7조(반환명령)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책자

■ 추진기간 : 2015. 1. 1 ~ 6. 30 (하반기 수급자 맞춤형 급여 운영 예정)

■ 추진방향

- 소득·재산조사, 자격요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한 보장 결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적정급여 지급 및 보장비용 징수·반환명령
- 수급자에게 복지정보 신속 알릴 정보망을 구축하여 수시로 변경되는 복지정보를 문자로 개인별 신속 전달 (2015년도 전달체계 개선)

■ 주요변경 내용

- 최저생계비 전년 대비 2.3% 증가(4인가구 기준 1,630천원→1,668천원, 월 38,000원 증가)

■ 업무흐름



■ 소요예산 : 34,648,235천 원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강 남 구
(사 회 복 지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b style="color: green;">관련 규정 및 근거	<p>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제27조(급여의 실시 등), 제42조(보장비용),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7조(반환명령) 																											
<b style="color: green;">추진 경위	<p>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경위 :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획 																											
<b style="color: green;">예산 사항	<p>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b style="color: green;">수혜자 및 범위	<p>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b style="color: green;">분야 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	<p>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① 관련부서 협조</td><td style="text-align: right;">-----</td><td style="text-align: right;">()</td></tr> <tr><td>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td><td style="text-align: right;">-----</td><td style="text-align: right;">()</td></tr> <tr><td>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td><td style="text-align: right;">-----</td><td style="text-align: right;">()</td></tr> <tr><td>④ 미래행정 수요예측</td><td style="text-align: right;">-----</td><td style="text-align: right;">()</td></tr> <tr><td>⑤ 시장조사</td><td style="text-align: right;">-----</td><td style="text-align: right;">()</td></tr> <tr><td>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td><td style="text-align: right;">-----</td><td style="text-align: right;">()</td></tr> <tr><td>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td><td style="text-align: right;">-----</td><td style="text-align: right;">(O)</td></tr> <tr><td>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td><td style="text-align: right;">-----</td><td style="text-align: right;">()</td></tr> <tr><td>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td><td style="text-align: right;">-----</td><td style="text-align: right;">()</td></tr> </table> <p>•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p>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O)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O)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b style="color: green;">타 기관 사 례	<p>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전국 시행 																											
<b style="color: green;">전문가 자 문	<p>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목 차

I	추진방향	4
II	세부 추진계획	6
	■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실시	
	○ 생계·주거급여 지급	
	○ 해산·장제급여 지급	
	■ 수급자 관리	
	○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 보장비용 징수 및 반환 명령	
	○ 복지정보 신속 알림망 구축 및 시행	
III	행정사항	13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계획

-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소득·재산 및 기타 자격요건에 조사 결과에 대한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의 결정
- 적정 급여 지급과 신속한 정보전달 및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비용의 징수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제27조(급여의 실시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2조(보장비용),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7조(반환명령)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

■ 추진방향

- 소득·재산조사 결과, 자격요건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에 대한 보장 결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적정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지급
-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기준에 따라 보장비용의 징수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정보 신속 전달

■ 업무흐름



■ 2015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 내용

○ 최저생계비 전년 대비 2.3% 인상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4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2015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 구체화(국가재정법 제96조)

▶ 보장기관의 귀책사유로 5년 이내 미지급된 급여는 소급지급 가능

○ 수급자 계좌 이외 개설 가능 경우 확대(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결)

▶ 미성년 단독가구 또는 무연고 신원확인 곤란자의 경우 제3자 명의 개설 가능

○ 생계·주거급여 제한 타법지원 대상에서 HIV¹⁾/AIDS 환자 제외

○ 수급권자의 보장결정 전·후 사망시 결정 취소 및 급여 지급 제외 명확화

○ 행정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반환명령 대상 개념 명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14. 12월말 현재, 단위: 명)

계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개소	인원
5,768	10,106	5,540	8,965	228	440	13	701

■ 소요예산 : 34,648,235천 원

○ 국시비 보조사업 : 국비(60%), 시비(28%), 구비(12%)

○ 급여별 예산액 (단위: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34,648,325	20,788,995	9,701,531	4,157,799
생계급여	24,146,550	14,487,930	6,761,034	2,897,586
주거급여	9,337,075	5,602,245	2,614,381	1,120,449
교육급여	1,043,800	626,280	292,264	125,256
해산·장제급여	120,900	72,540	33,852	14,508

1)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란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AIDS)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하며, 보통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를 HIV 또는 HIV 감염이라고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결정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소득·재산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결정(책정, 중지, 제외) 하여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2015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 세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 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능력 없음 : 수급(권)자 선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 - 부양능력 있음 : 수급(권)자 선정 제외
-------------	---

○ 2014년 보장결정 현황 (단위 : 가구/명)

계		책정		중지		부적합		비고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1,374	2,205	562	842	451	605	361	758	

■ 기대효과

- 조사결과와 선정기준 적합여부 등 보장결정에 철저
- 급여실시 여부 및 적정한 급여내용의 결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 등 필요한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 교육급여, 의료급여 지원은 별도 방침마련 계획

생계·주거급여 지원

■ 지급대상 : 일반수급(권)자 가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수급(권)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주거급여 : 수급(권)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한 급여 지급

■ 지원 수준

○ 산정기준

가구별 생계급여액 (77.968%)	+ 주거급여액 (22.032%)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100%)
------------------------	----------------------	-----------------------------------

○ 2015년도 현금급여 기준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A)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타 지원액(B)	117,993	200,908	259,904	318,901	377,898	436,894	495,890
현금급여기준 (C=A-B)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1,848,716	2,098,361
주거급여액(D)	110,003	187,303	242,304	297,306	352,308	407,309	462,311
생계급여액 (E=C-D)	389,285	662,837	857,480	1,052,122	1,246,764	1,441,407	1,636,050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49,645원 증가 (8인가구: 2,348,006원)

■ 지원 방법

○ 지급단위 : 가구를 단위로 산정 지급

○ 급여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지급

○ 지급방법 : 행복e음 급여자료생성에 의해 매월20일 계좌이체



■ 지원 기준

- 신규 수급(권)자에 대한 지급기준
 - ▶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에 산정된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구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지급기준
 - ▶ 제외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급여중지자에 대한 지급기준
 - ▶ 급여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
- 가구원 출생시 지급기준 : 출생일 기준으로 가구원 추가하여 급여 지급
- 수급(권)자 사망시의 지급기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지급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의 지급기준
 - ▶ 원칙적으로 기초생활급여 전액을 지급
 - ▶ 다만,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는 30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장기 입원하여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공제대상 월 급여에서 공제하되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보전한 후 급여지급

■ 기대효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 보장을 통한 행복추구권 확보

해산 · 장제급여 지원

■ 지급대상

- 해산급여 : 수급(권)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장제급여 :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의한 의사자

■ 지원내용

- 해산급여 : 조산(助産) 및 분만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장제급여 :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수준

- 해산급여 : 1인당 600천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1구당 750천원 지급

■ 지원방법

- 해산급여 : 수급(권)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수급금품을 지급
- 장제급여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
-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7일 이내에 지급

■ 기대효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 지원과 장제비 부담 경감

3.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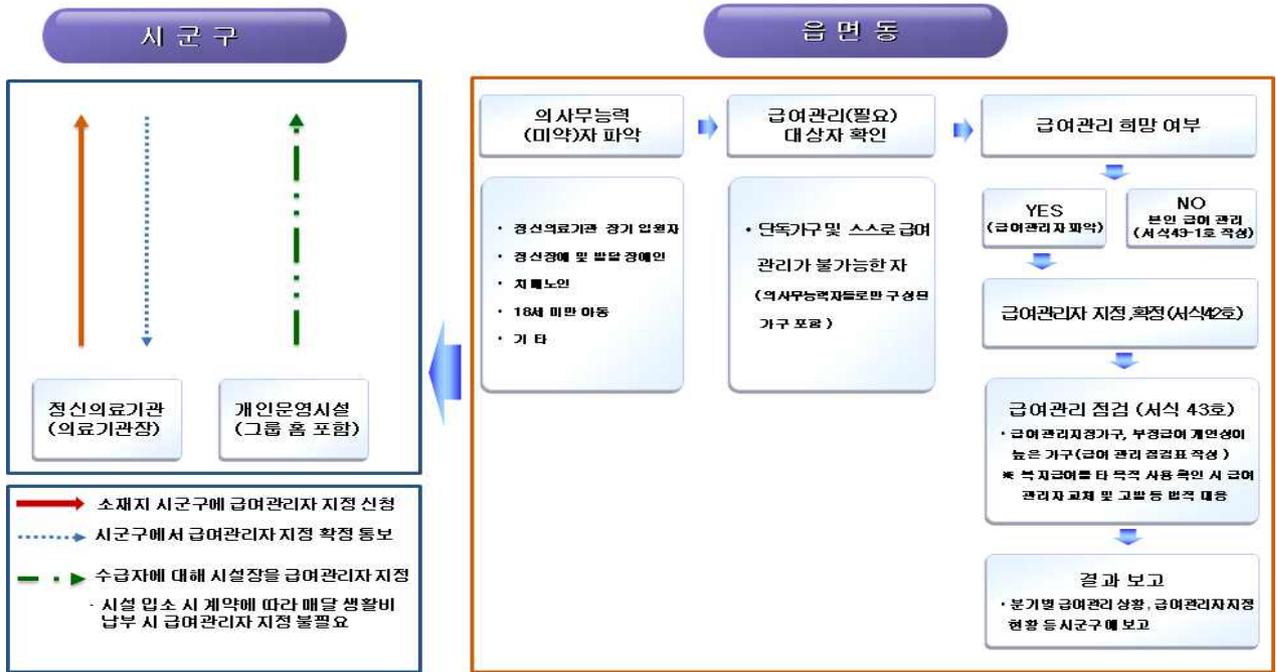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한 급여관리 사항을 확인하고 부정수급 및 부양의무불이행자에게 보장비용을 징수하여 복지재정 누수를 적기에 방지하고자 함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모니터링

■ 관리대상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수급자(단독 포함)들로만 구성된 가구
- 정신의료기관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정신분열,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정신 지체로 진단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1~3급),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 장애상태·의사능력 정도, 생활실태 등 개인별 차이를 감안하여 읍·면·동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본인 스스로 관리사용 능력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관리자로 지정 되거나 3촌 이내 친족이 악용의 우려가 없다 보장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외 가능

■ 급여관리자 지정 및 관리 절차



■ 급여관리 상황 모니터링

- 관리방법 : 급여 관리자는 급여를 지출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영수증 관리)
- 관리상황 모니터링
 - ▶ 동주민센터 : 반기별 급여점검 및 행복e음 결과 등록
 - ▶ 시군구 : 반기별 동 급여관리 점검, 병원입원자에 대한 급여관리자 지정·승인 등
- ※ 관외지역 입원자는 병원 소재지 보장기관과 협의하여 급여관리 위탁

■ 기대효과

- 의사무능력(미약)수급자의 수급권 부당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 및 차단

보장비용의 징수

■ 보장비용의 징수

- 부정수급의 확인
 - ▶ 확인기관 :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
 - ▶ 보장기관은 부정수급의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보장비용 징수결정

○ 징수금액

- ▶ 징수금액은 보장기관이 지급한 급여(급여실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징수금액을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누어 징수

○ 징수대상자 관리

- ▶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 관리

○ 보장비용의 징수절차

- ▶ 보장비용 납부통지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
- ▶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통지서 및 고지서를(등기우편 등)으로 송부

○ 분할납부

- ▶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 징수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감안 분할 징수

○ 징수금액의 처리

- ▶ 징수 당해연도 급여에 대한 징수금은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처리
- ▶ 과년도 급여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처리

■ 기대효과

- 부적정 지급 급여 징수를 통한 복지재원 누수 방지

반환 명령

■ 반환의 요건 및 대상

○ 반환의 요건

- ▶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 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 반환의 대상

- ▶ 과잉지급된 수급품의 전부 및 일부

■ 반환의 감면(감액 또는 면제)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반환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 수급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급여내용,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 기대효과

- 과잉지급 급여에 대한 반환 및 기초수급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탄력적 운영 가능

복지정보 신속알림 정보망 구축

■ 사업목적

- 신설·변경되는 복지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

■ 지원내용

- 수시(정기) 필요한 문자 메시지 발송

■ 구축기간

- 2015. 1월~2월(3월부터 활용)

■ 구축방법



■ 활용방안

- 매년 제도·급여 변경 사항 안내
-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안내
- 언론보도 특이사항 안내
- 담당자 변경 시 안내 등

■ 기대효과

- 찾아가는 복지행정의 체감도 극대화

동주민센터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홍보 및 기존 중지·탈락자 자료 관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락처 정비
- 의사무능력(미약)수급자 급여관리 실태 반기별 확인

사회복지과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책자 준용
- 복지정보 신속알림 정보망 구축 및 활용(2015. 3월)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담당자 자체교육. 끝.